

1. 消防法 改正作業

内務部에서는 消防行政의 革新的 發展方案을 講構하기 위하여 消防研究企劃團을 構成, 消防行政의 大改革 作業을 시작하고 있다.

現在 作業하고 있는 目的은

- 消防法 全盤에 關치 國民의 不便要因과 行政 편의주의적 事項을 全面 改正하고
- 現實과 距離된 消防行政制度 및 業務上의 不合理點을 改善함으로써 消防行政의 혁신적 발전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한다.

이 消防研究企劃團은 内務部 書記官을 団長으로 하여 附隨的消防公務員, 有關團體 및 斯界의 전문가等 15名으로 構成, 消防行政制度, 消防施設, 危險物等 세分野로 나누어 作業을 하고 있다.

當協會에서는 作業團員으로 防災研究部 金炳晚次長과 河正鎬代理가 계속 참여하고 있으며 1980年 11月 20日부터 12月 30일까지 40日 동안은 作業室 및 先進 各國의 技術資料等을 提供한 바도 있다.

消防研究企劃團에서는 1981.1月末 現在 消防法規中 消防法의 改定案을 作成, 財務部, 建設部, 商工部等 政府 部處間의 協議 과정을 거쳐 法制處 審議中에 있으미 消防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도草案作成이 거의 完了 단계에 있다고 한다.

現在 消防法規 改定內容은 民衆의 要素을 除去하고 國民의 편의를 為主로 하여 國民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方向으로 各種 基準이 補完되어 있으며 또한 一般 國民들이 消防法規를 보다 알기 쉽게理解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現行 消防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中의 一般的인 事項과 許可, 認可等節次에 關한 事項은 現行대로 消防法 施行令, 施行規則으로 規定하고 그 밖의 순수한 技術的 事項은 別度의 技術基準으로 편집 재정한다고 한다. 그려므로 一般 國民은 消防法, 施行令, 施行規則을 보다 알기 쉽도록 보다 專門的인 事項을 알기 위한 소방설비業者, 點檢關係者들은 技術基準까지 보도록 하고 있다.

이 消防行政의 대 개혁 作業은 法規施行을 위한 各種 書式 및 기술 기준 또한 지방 차치 조례등 각종 지침 훈령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1981년도 6월말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 試驗所 設立計劃 承認獲得

當協會의 宿願事業인 防災試驗所의 設立計劃이 지난 12月末 當局의 承認을 資得함으로써 1981年부터 1985年까지의 5個年 計劃으로 그 設立을 보게 되었다.

이 計劃은 1978年 3月 22日 國務總理指示 第5號로 示達된 바 있으며, 1980年 監查院 監查時에도 그 施行이 提求되었던 것이다.